



세종특별자치시의회

의회운영위원회

2012. 10. 10.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검 토 보 고

전문위원 변영호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제안경과

- 2012년 9월 26일 박영송의원(대표발의)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본 개정규칙안이 제출됨

2. 제안이유

「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출범과 관련 조례개정에 따른 직위명칭 변경 등 후속 조치사항 등을 본 개정규칙안에 반영코자 제안하는 사항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의원의 청가서 및 결석계 제출시 유사조문 정비 간결화(안 제8조)
- 나.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장·부의장의 선거일시 및 임기만료시 익일 선거규정 삭제(안 제9조제6항)
- 다. 의장·부의장 보궐선거시 다른직의 사임규정 구체화(안 제12조)
- 라. 회기의 결정·연장 등에 관한 조문의 명확화 및 간결화(안 제15조)
- 마. 휴회시 회기 재개요구, 제출의안 수정·철회, 번안 등의 절차에 “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”도 할 수 있도록 삽입(안 제18조, 안 제30조제2항, 안 제31조)

- 바. 산회규정 신설(안 제18조의2)
- 사. 불합리 규정, 문구 등 정비(안 제24조제1항, 안 제30조제1항, 안 제33조, 안 제59조, 안 제62조, 안 제63조, 안 제70조, 안 제72조제3항)
- 아. 예결특위의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내용 존중 규정 신설(안 제74조제3항)
- 자. 시정질문서 의제별 질문의원수 규정사항을 삭제하고, 질문의원의 질문순서는 질문일 2일전까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(안 제81조제4항 및 제6항)

4. 참고사항

- 근거법규 : 지방자치법 제71조(회의규칙)
- 행정규제 : 해당사항 없었음
- 예산사항 : 별도의 소요예산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- 안 제63조(의안의 상정시기)중 “조례안외 의안 상정시기 7일”의 명문화규정 타당
 - <참고>국회법 제59조(의안의 상정시기)
 - 일부개정 법률안 : 15일
 - 제정·폐지 및 전부개정법률안 : 20일
 - 법률안 외의 의안 : 20일

○ 안 제74조(예산안 심의)중 제3항 신설 “예결위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 존중”의 명문화 규정 타당

- <참고>국회법 제84조(예산안·결산의 회부 및 심사)

⑤ 예결위는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내용 존중

-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의 증액 또는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의 동의 필요

○ 안 제81조(시정질문)

현 행	개 정 안
제81조(시정질문) ① -③ (생략) <u>④ 의제별 질문 의원 수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</u> ⑤ (생략) ⑥ <u>의회운영위원회는 질문위원회와 질문순서를 질문일 2일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</u>	제81조(시정질문) ① - ③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⑤ (현행과 같음) ⑥ <u>질문의원의 질문순서에 대하여는 질문일 2일 전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</u>

- <참고>국회법 제122조의2(정부에 대한 질문)

⑧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의장에게 통지하고, 의장은 질문순서를 정한후 본회의개의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※ <의견>

- 제4항에서 질문의원 수의 규정사항과
제6항의 개정안중 운영위는 질문일 2일전까지 질
문순서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알려야 하는 규정을
삭제코자 하는 사항은 본 회의규칙의 운영 또는
적용함에 있어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아짐